

선	기관의 장
람	

시 G 보

제29호 2023. 7. 19.(수)

고 시

- 광양시 고시 제2023-225호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 1
 광양시 고시 제2023-226호 광양국가산업단지(광양항 원료부두 #7선석) 개발실시계획
 (변경) 승인 고시 3
 광양시 고시 제2023-228호 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폐지 고시 5

공 고

- 광양시 공고 제2023-1582호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7
 광양시 공고 제2023-1583호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2
 광양시 공고 제2023-1584호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7

회										
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2323, 행정 2713)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7. 19.

광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수동1길 23(성황동) 외 2건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338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 7. 19.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 사유
계	건 물 번 호 부 여 3 건					
1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897-5	전라남도 광양시 수동1길 23 (성황동)	20230719	20210210	옛 마을이름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
2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309-13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내우정길 36-4	20230719	20081001	옛 지명에서 인용
3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1544, 산349-1, 1544-1, 1545, 1545-1, 1546-1, 1547-1, 1548-1, 1549, 1549-1, 1551-2, 1552-1, 2799-4, 2815	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대청길 15	20230719	20081001	옛 지명에서 인용

광양국가산업단지(광양항 원료부두 #7선석) 개발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

광양국가산업단지(광양항 원료부두 #7선석) 개발실시계획(변경) 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승인 하고,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19일

광 양 시 장



1. 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

- 광양항 원료부두 #7선석 신설공사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·주소(변경없음)

- 성 명 : (주)포스코플로우 대표 김광수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

3. 사업의 목적 및 변경사유

- (주)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중장기 조강증산 및 SNNC능력증강 계획에 다른 물동량 증가로 향후 기존부두의 안벽점유율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만톤급 원료부두 1선석을 신설하여 원활한 원료하역 및 수송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
- 최근 운임의 급격한 상승과 선박대형화로 7만톤 이상 모선에 대한 수요증가, 부두 접안능력 증대로 원료구매 시 유리한 위치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, 행정절차 간소화, 부두운용 효율 극대화

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- 위 치 :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국가산업단지 광양항 원료부두 일원
- 면 적 : 24,900㎡

5. 사업시행기간(변경없음)

- 2012. 8. ~ 2014. 6.

6.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선 좌 수			비 고
• 반입부두 -제철소	350,000DWT × 1 250,000DWT × 2			- 안벽 3,070m 반입부두 2,260m 반출부두 240m 박스슬라브용 270m 기타광석 300m - 방사제 : 1,112m - 후판전용 Ro-Ro부두
-C.T.S	200,000DWT × 1 30,000DWT × 1			
	300,000DWT × 1			
-박스라브용	Pontoon+연결식 1식 50,000DWT × 1			
-기타광석	기정	70,000DWT × 1		
	변경	85,000DWT × 1		
• 반출부두 - C.T.S	30,000DWT × 1			
• 제품부두 -제철소	50,000DWT × 1 30,000DWT × 4 20,000DWT × 1 5,000DWT × 6 Dolphin+연결식+Pontoon 1식			- 안벽 : 2,220m - RO-RO관련 하역시설
• 관리용부두	405m			
• 시멘트부두 - 연관단지	10,000DWT × 5 5,000DWT × 1			- 안벽 : 930m
• 물양장	80 × 130m			- 연관단지
• LNG부두	형 태	용 량	DWT	- Trestle 750m - Dolphin 420m
	Moss	14만 m³ 급×1	71,100	
	Membrane	18만 m³ ×1	87,900	

7. 승인 조건(별첨) - 게재생략

8. 상세 서류 및 도면의 고시는 생략하되 광양시청 산단과에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. (☎ 061-797-2932)

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.

〈폐지 내역〉

연번	폐지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 폐지 사유
1	전남 광양시 옥곡면 대죽1길 70-16	2023. 5. 26.	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(※상세내역 불임참조)
2	이 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(☎ 797-338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7. 19.

광 양 시 장

도로명주소 폐지 대상

연 번	업무 구분	도로명주소	건축물대장 말소일 (건축물멸실 확인일)	폐지 고시일	폐지 사유
1	건물번호 폐지	광양시 옥곡면 대죽1길 70-16	2023. 5. 26.	2023. 7. 19.	건축물대장 말소

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

「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7월 14일

광 양 시 장

1. 조 례 명 :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2. 개정 이유

○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코자 함.

- 상위 법령인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이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정비코자 함.

3. 주요 내용

본문 제1
조

○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을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
(제1조 개정)

본문 제3조제2
항

-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을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
(제3조제2항 개정)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기간 : 2023. 7. 15. ~ 2023. 8. 3.(20일간)

6. 의견 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양시장(환경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 서식

☐ 조 례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락처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라. 의견 제출할 곳

- 1) 주소 : (57785)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, 광양시청 환경과
- 2) 전화 : 061-797-2786
- 3) 팩스 : 061-797-2585
- 4) 전자우편 : cis@korea.kr

7. 그 밖의 사항

○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(061-797-2786)에
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환경교육진흥법」”을 “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환경교육진흥법」”을 “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
제3조(책무) ①(생략) ② 사업자와 모든 광양시민은 환경교육에 관하여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	제3조(책무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---- -----

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

「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7월 14일

광 양 시 장

1. 조 례 명 :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2. 개정 이유

○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조례 개정사항 등을 정비코자 함.

• 상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 신설(2020.6.9.)

• 관련조례 : 「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」 제9조 삭제, 「광양시 재무회계규칙」 명 변경(개정후 : 「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)

3. 주요 내용

본문 제5
조

○ 통합관리기금 관리 근거 규정 개정(제5조 제3항 개정)

• 「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」 제9조 ⇒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

본문 제9
조

-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준용 관련 조례명 개정(제9조 개정)
 - 「광양시 재무회계 규칙」 ⇒ 「광양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기간 : 2023. 7. 15. ~ 2023. 8. 3.(20일간)

6. 의견 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양시장(환경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 서식

☐ 조 례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락처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라. 의견 제출할 곳

- 1) 주소 : (57785)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, 광양시청 환경과
- 2) 전화 : 061-797-2786
- 3) 팩스 : 061-797-2585
- 4) 전자우편 : cis@korea.kr

7. 그 밖의 사항

○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(061-797-2786)에
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「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안

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「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」 제9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광양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.~②. (생 략) ③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광양시 금 고에 예치 관리하며, 나머지 금액은 「 <u>광양시 기 금관리 기본 조례</u> 」 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관 리하여야 한다.	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.~②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「 <u>지방재정법</u> 」 <u>제9조의2</u> -----
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 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 <u>광양시 재무회계 규칙</u> 」 과 「 <u>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</u> 」를 준용한다.	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「 <u>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 」 -----

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

「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7월 14일

광 양 시 장

1. 조 례 명 :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

2. 개정 이유

○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코자 함.

- 폐지 법령 :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
- 개정 법령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
- 제정 법령 :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

3. 주요 내용

본문 제11
조

-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일부(환경표지 인증제품, 저공해자동차) 개정 (제11조 제2호 및 제4호 개정)

○ 교육훈련 지원관련 기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 개정(제12조 제2항 개정)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기간 : 2023. 7. 15. ~ 2023. 8. 3.(20일간)

6. 의견 제출

○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양시장(환경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 서식

☐ 조 례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락처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라. 의견 제출할 곳

1) 주소 : (57785)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, 광양시청 환경과

2) 전화 : 061-797-2786

3) 팩스 : 061-797-2585

4) 전자우편 : cis@korea.kr

7. 그 밖의 사항

-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(061-797-2786)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제품

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

제12조제2항 중 “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5조의2에”를 “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11조(판단기준의 설정) (생략) 1. (생략) 2.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3. (생략) 4.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5. (생략)	제11조(판단기준의 설정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3. (현행과 같음) 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----- 5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교육훈련) ① (생략) ②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.	제12조(교육훈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----- -----